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음.

나. 추나요법 요양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안 별표 2 제3호라목, 안 별표 2 제3호거목 신설)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을 부담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을 부담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 17. ~ 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호라목5) 및 6)”을 “제3호라목5)·6)·9) 및 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호사목”을 “제3호사목 및 거목”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에 9) 및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

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가목1)·2)·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략)</p> <p>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 일부부담금은 더하지 <u>아니한다</u>.</p> <p>1. (생략)</p> <p>2. 별표 2 <u>제3호라목5) 및 6)</u>에 따라 부담한 금액</p> <p>3. 별표 2 <u>제3호사목</u>에 따라 부담한 금액</p> <p>4·5. (생략)</p> <p>④ ~ ⑥ (생략)</p>	<p>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 <u>않는다</u>.</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제3호라목5)·6)·9) 및 10)</u>-----</p> <p>3. ----- <u>제3호사목 및 거목</u>----- -----</p> <p>4·5. (현행과 같음)</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연 락 처	(044) 202 - 2734